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78 호 2022. 12. 22.(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7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9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8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1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30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0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2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49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89호 울산광역시 북구 법무행정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58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정..... 62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1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90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2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폐지훈령..... 120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3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폐지훈령..... 122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 인권보호 규정 일부개정훈령..... 124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97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2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98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2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0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2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1호[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73, 소로3-27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3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2호[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8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4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3호[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276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4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4호[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5호[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소로2-88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6호[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160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770호[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 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6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774호[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6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784호[학교시설사업(약수초등학교) 시행계획 의견청취 열람공고]..... 170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
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 4. 캐릭터: 별표 4, 별표 5

제8조제1항 중 “상징물의 사용자는”을 “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
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금액의 1퍼센트로 하고, 사
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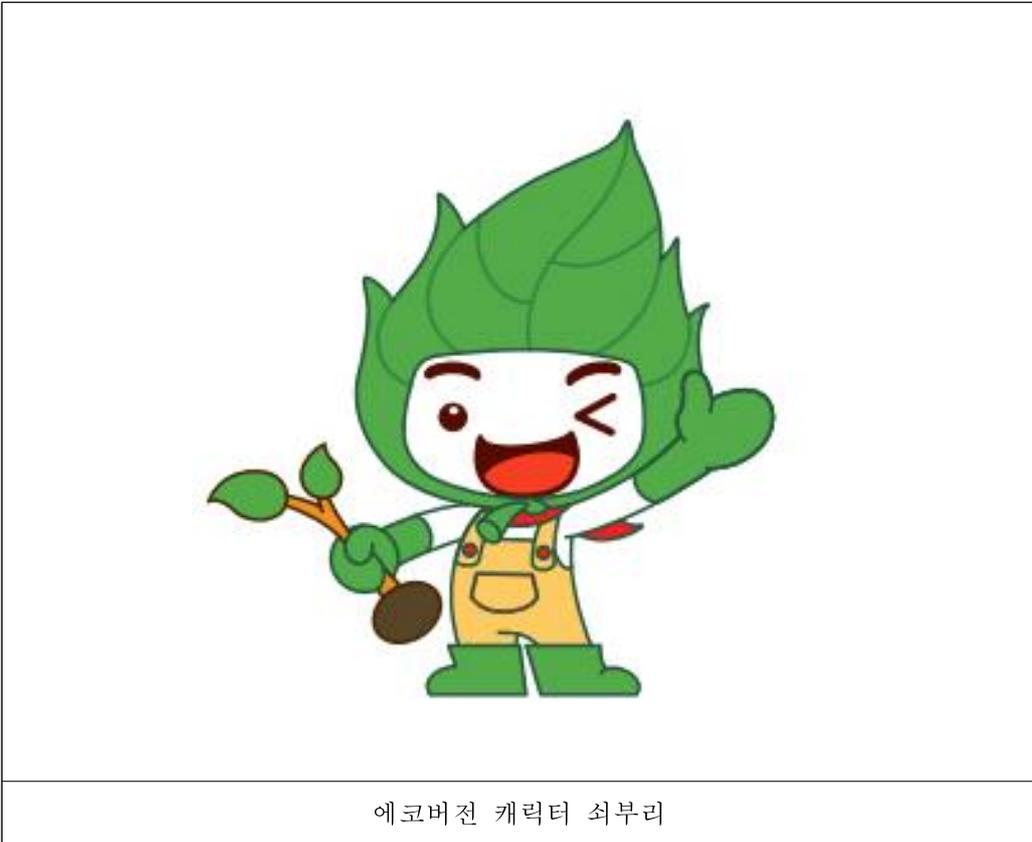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 전액 면제
 2.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캐릭터(에코버전)(제3조제4호 관련)



1. 색 상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CMYK C72 M12 Y10 K0
RGB R69 G162 B54



CMYK C0 M100 Y100 K0
RGB R230 G0 B18



CMYK C100 M77 Y100 K0
RGB R0 G74 B98



CMYK C68 M75 Y100 K29
RGB R88 G63 B35



CMYK C3 M23 Y72 K0
RGB R247 G204 B86

나. 캐릭터는 용도에 따라 단색으로 하여 제작·사용 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 가. 에코버전 캐릭터 쇠부리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울산 북구의 자연환경 및 다양한 형태의 도시정원을 상징하며, 식물 이파리 모양의 머리 형태는 친환경 생태도시,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울산 북구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표현
- 나. 에코버전 캐릭터가 들고 있는 소품은 북구 12경 중 하나인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의 편백나무 묘목, 의상은 에코백을 재활용한 의상이므로써, 녹색 도시 북구의 친환경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

3. 작도법

- 가. 캐릭터 작도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할 경우 본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울산 북구 대표 캐릭터인 쇠부리 에코버전이 제작됨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양한 상품 발굴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사용료 감면조항도 신설하여 캐릭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캐릭터 상징물의 종류 추가(제3조제4호 및 제5호, 별표 5)
- 사용료 부과 기준 및 감면근거 신설(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주민의 미담, 수범사례
-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 중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를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각종 취재 및 원고 제출
-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서포터즈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콘텐츠 생산에 참여하거나 공유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비, 원고료, 출연료 등 경비
- 2.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

제8조의 제목 “(표창)”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포터즈”를 “사람”으로, “표창”을 “포상”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구정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블로그 이외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게시글 공유 및 영상 출연, 제작 등에 대해서도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재사항 추가 (제3조)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 인원 삭제, 활동사항 명시(제6조)
- 예산의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내용 명확화 (제7조)
- '표창'을 '포상'으로 변경, 포상대상 확대 (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71조의2제1항”을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제74조의2제1항제1호”를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의2제1항”을 “영 제91조의11제1항”으로,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74조의2제1항제2호”를 “영 제91조의11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2. 1. 28.시행)됨에 따라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인용 조문 변동사항 반영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 제103조의3(제2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 제91조의11(제3조, 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7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소1동 및 농소2동의 관할구역란 중 “963-1~963-71” 을 각각 “963-1~963-71, 967~1029” 로 한다.

별표 2의 8란 다음에 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중산동 57-1, 58-1, 60, 61-5, 61-10~11, 62-1, 63-4~5, 63-13~16, 63-20, 77-1, 78-2~4, 81-3~5, 82-5~6, 82-8~11, 83-3, 83-7~8, 83-10~11, 83-13, 86-6, 86-9~12, 86-14, 87-3~4, 87-6~7, 88-7, 88-16~17, 88-19, 94-6~7, 94-9, 95, 95-1, 96-31, 1185-16~17, 1185-19~20, 1185-22~24, 1186-20~21, 1186-23번지(6,474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중산매곡지구 도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중산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산동 63필지(6,474㎡)를 매곡동으로 편입(별표 1, 별표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79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넓히하고자 조성된 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022. 12. 31.)됨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여 문화진흥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제5조)
 -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기금의 수입·지출 관련 준용 규정 현행화(제18조)
 - (당초)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 (변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8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2.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 6. 22.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
-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제5조 ~ 제6조)
- 지원 사업(제7조)
-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9조 ~ 제12조)
- 포상(제14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 구성은 규칙 제31조의3제2항을 따르되, 구에 주소지를 둔 지원자 중 경력 및 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야생동물 질병예방,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피해방지단원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물품(실탄, 피복 등)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획보상금 지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과의 중복 지급은 불가한다.

1. 멧돼지 : 마리당 100,000원 이내
2. 고라니 : 마리당 50,000원 이내
3. 조류 : 마리당 5,000원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농작물 수확시기에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 정의 조항 신설(제2조)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지원 관련 조항 신설(제10조)
-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관련 조항 신설(제1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 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별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609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갑,을)”를 “정리보류표(갑,을)”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

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5조의 제목“(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징수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수부”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제20조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74조의2제6항”을 “영 제91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갑)·(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병)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style="color: red;"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style="color: red;"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결 정 결 의 서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분 임 징 수 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 당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 당 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	관	세 입 연 도		년도 세입	
		결 정 내 용	본세	가산금	계
	항 목	세 액			
		가 산 세			
		결 정 액			
결 정 세 액	금 원(W)				
납 세 인 원	시(도) 구(구)		번길 외 명		
적 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수납구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m²)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2. 1. 28.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가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 변경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 제11호서식)
 - (현행) 결손처분
 - (개정)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시효완성정리
 -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리보류
-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항의 변동사항 반영 (제21조, 별지 제11호, 제1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단,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집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북

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복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복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복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은 제8조에 따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견서

건 명	
1. 종합의견 ○ ○	
2. 공통사항 검토 ○ ○	
3. 입지유형별 검토 - 도시·농촌·하천지역 등으로 구분 작성 ○ ○	
4. 심의대상 유형별 검토 ○ ○	
5. 기타 검토의견 ○ ○	
심의결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

0000. 00. 00.

위와 같이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 의견을 제출함

위원 성명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결서

제 20 - 00호

심의개요

- 일시/장소:
- 출석위원 명단:

심의안건

- 사업명:
- 사업개요:

의결사항

-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 심의결과 :

※ 세부심의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재

출석위원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위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제1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제2조 ~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8조 ~ 제13조)

울산광역시 복구 법무행정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
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 훈령 제289호

울산광역시 복구 법무행정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울산광역시 복구 법무행정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복구 법무행정 관리 규정”을 “울산광역시 복구 법제사무 처
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와 훈령·예규의 입법에 관한 절
차·기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와 훈령·예규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중 “법무행정”을 “법제사무”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다음의 “제2장 법제사무”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주관부서장””을 “이하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 중 “기획홍보실장”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0일미만”을 “20일 미만”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기획홍보실장”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는”을 “날부터 5일 이내에”로, “날로부터 20일까지는”을 “날부터 2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15일전까지”를 “15일 전까지”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 “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기획홍보실장”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홍보실장”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장(제15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담당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며
- ‘소송사무’ 관련 조문을 삭제 후 ‘소송사무 처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복구 법무행정 관리 규정」
 -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 소송사무 관련 조문 삭제(제15조 ~ 제32조)
-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명 변경(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1조)
 - 기획홍보실장 →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정비 등 (제3조, 제6조, 제10조, 제21조)

울산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울산광역시 북구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퇴직 또는 전출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한 공무원이 당사자등이 된 형사사건(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업무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그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담당관·과·소, 동 또는 그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소송 또는 직무관련사건에 있어 소송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소송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하고, “송무취급 공무원”이란 소송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승소”란 구청장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 “전부승소”뿐만 아니라 “일부승소”, “상대방 소취하”, “화해·조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9. “판결”이란 판결, 결정, 조정 등 법원의 모든 판단을 말한다.
10.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1. “판결금”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각 소송사건은 해당 사건 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되(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지휘, 통제하며 송무취급공무원이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울산광역시시장과의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미리 울산광역시장(참조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 둘 이상의 구·군(구·군의 기관장을 포함한다)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패소할 경우 울산광역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사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 진행사항과 종결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① 소송관계문서(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가 잘못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6조(타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 보고 :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수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 :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제기자의 소속, 직급, 성명
 -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법무부에 보고 :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들은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4. 각급 검찰청의 장에 보고 :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소송의 제기

제7조(제소요청) ① 구 또는 구청장등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소송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명, 당사자, 관할법원 등)
2. 사건경위 및 처분사유
3. 제소배경 및 사유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5. 소송수행자등 지정 및 변호인 선임 사항(자체소송 수행 여부)
6.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제소결정) 제7조에 따라 제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증거자료
4.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제9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소나 응소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발급한다. 다만,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발급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2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5. 소송수행자등의 해임 시 - 해임서(별지 제5호서식)

②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을 위임할 때에는 각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 계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게 되어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6.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제기된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과 민사상 책임에 관련된 사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되, 응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 ⑤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 ⑥ 고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한 결과 패소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상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고문변호사가 수임요청을 받았을 때에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수임을 거부할 수 있다.
- ⑧ 울산광역시와 구 또는 구청장등과 소속 공무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상소이유서, 서증 등의 작성 및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への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 시점에 소송 진행 사항 종합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소송 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사항
 2. 변론·선고 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4. 패소 사건에 대한 패소내용, 원인분석 및 문제점,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도 수행한다.
- ③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사람은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2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응소하되 응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상적격, 당사자적격, 관할법원, 제소기간 등 본안 소송 전 항변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작성하되 상대방의 주장사실 중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쟁점에 대하여는 반박자료 및

관계 법령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들은 항상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하여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반소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 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소송의 수행) 소송수행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보고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준용)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와 관련된 소송수행자들의 지정, 지명, 직무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소송 결과에 대한 조치

제18조(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들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문 첫 장에 수령일자과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수행자들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결내용, 고문 변호사 의견 및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구청장의 방침결정을 얻은 후 상소하여야 한다.

제21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

제22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금의 청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 청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소송비용의 청구) ① 소송수행자들은 제22조제3호의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원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 또는 신청 후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소송비용확정액에 대한 추심을 아니 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2.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비용보다 적을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소송수행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관련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원심법원에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게 하거나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소송비용의 회수) ① 제23조에 따라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포함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의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 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6. 패소 이유가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제26조(구상권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 지급을 구가 대위 변상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 및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등(이하“귀책사유자”라 한다.) 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귀책사유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7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이 부여된 소송사건의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판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 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 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할 수 있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및 각서(별지 제7호서식, 각서는 가집행선고금일 경우에만 작성)
2. 판결서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3.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6장 직무관련사건

제28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직무관련성을 확인한 후 변호사인 소송대리

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와 구청장의 방침을 거쳐 해당 공무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을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민사소송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한다.

④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소송대리인 선임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제31조의 직무관련사건 지원비용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소송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직무관련사건은 직무관련사건

부서장과 송무취급공무원이 소송담당자가 되며,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 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지원범위)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단계를 포함하여 형사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2.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까지

제31조(직무관련사건 지원비용 회수)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변호사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비용반납) ① 제28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규정, 지침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 함.

1. 상대방 :

2. 사건명 :

3. 법원 및 사건번호 :

※ 담당자 연락처 :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직 인)

○○○○법원 귀중

210mm×297mm [백상지 80g/m²]

[별지 제3호 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
원 고 ○ ○ ○
피 고 울산광역시 북구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 ○○○, ○○○, ○○○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

나. 신청이유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부

2. 소송위임할 사항

-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 다. 소의 취하
-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바. 복대리인의 선임
-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2○. ○○. ○○.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 (날인 또는 서명)

대표자 구청장 ○○○ ㉠

○○○○법원 귀중

210mm×297mm [백상지 80g/m²]

[별지 제4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사 건	(사건번호) ○○○○법원 202○구합○○○○ (사 건 명) ○○○○○○○○○○○○○○	
당 사 자	원고 ○ ○ ○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혹은 울산광역시 북구)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모든 소송행위와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		
수 임 인	변호사 ○ ○ ○ (도로명)주소 : 울산 ○구 ○○로 TEL : 052)○○○-○○○○ FAX : 052)○○○-○○○○	변호사 확인인
	1. 위 사건에 관한 소의 제기 및 일체의 소송행위 1. 반소의 제기 및 응소 1. 소의 취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1.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1. 복대리인의 선임 1. 목적물의 수령 1.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 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2022 . ○ ○ . ○ ○ . 위임인 : 울산광역시 북구 대표자 구청장 ○ ○ ○ ①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변호사회 경유
○○○○법원 귀중		

210mm×297mm [백상지 80g/m²]

[별지 제5호서식]

(소송수행자) 해임서

1. 사건번호

2. 원 고

3. 피 고

위 당사자 간의 ○○○○○○○○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 ○○○』를 (소송수행자)에서 해임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

○○○○법원 귀중

210mm×297mm [백상지 80g/m²]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사 건 명
(사건번호)

당 사 자

원고

피고

소송담당자

본인은 위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복구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 11조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 80g/m²]

(뒷 면)

각 서

원고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해당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해당 가집
 행선고 금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 변제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이하로 감축되는 경우
 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원고 성명 ①인

주소

위 소송대리인 성명 ①인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확 약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8조에 따른 신청을 함과 아울러 같은 규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일체를 즉시 울산광역시 북구에 변제할 것과 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확약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 80g/m²]

[별지 제9호 서식]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피 고 인 :

(피의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는

변호사 법무법인 ○○○○(울산광역시 ○○구)의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선임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법원 귀중

<별지>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소송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법무행정 관리 규정」에서 소송 관련 내용 삭제 후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제정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사항(2021. 10. 25.의결, 의안번호 제2021-671호)을 반영하여 소송비용 회수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제1조, 제2조)
- 소송의 주관 및 소송문서 관리(제3조 ~ 제5조)
- 소송사건의 수행 절차(제6조 ~ 제17조)
- 소송 결과(판결 확정 후) 조치(제18조 ~ 제27조)
- 직무관련사건(제28조 ~ 제32조)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1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종목 및 명칭)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부”라 한다)의 설치종목 및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치종목 : 사격, 장애인수영
- 2. 명 칭 :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제3조(구성 등) ① 운동부는 단장, 주무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운동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주무는 운동부 업무 담당자가 되며, 단원은 지도자 및 선수로 하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 장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운동부의 운영 총괄
 2. 주 무 : 운동부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 수행
 3. 지 도 자 : 선수의 발굴·육성, 훈련계획 수립·시행, 경기대회 참가, 합숙소 유지관리 등 소속선수의 관리 및 사무 전반 담당
 4. 선 수 :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참가
- ③ 운동부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권보호 조치 등) 운동부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 인권보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인사 및 복무

제5조(임용 및 자격요건) ① 단원은 구청장이 임용하되, 지도자의 최초 임용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단원의 임용은 계약직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부터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간 재계약에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③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지도자·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④ 구청장은 우수선수 확보에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구비서류)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지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복지카드 사본(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선수에 한함) 1부
5.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경기 실적증명서(선수에 한함) 또는 지도 실적증명서(지도자에 한함) 1부
7. 전 소속팀 이적동의서(이적 시에 한함) 1부
8. 전문스포츠지도사(종전의 경기지도자)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지도자에 한함) 1부
9. 반명함 사진(3×4cm) 또는 여권사진(3.5×4.5cm) 2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설치) 운동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원의 계약해지 및 징계 의결
2. 그 밖에 운동부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운동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부서장, 운동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법조인

3. 체육분야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동부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복무) ① 단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휴가의 범위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와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2. 특별휴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항을 제외하고 본 규정 및 계약서를 따른다.

②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단장에게 신고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겸직금지) 단원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계약해지)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박탈된 경우
5. 예산감축 또는 내부방침에 따라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제14조(징계사유 등) 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했을 경우
2.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및 그 밖에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임 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정직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1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임은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월 보수액 및 훈련 관련 경비를 미지급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 보수액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 ⑤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누우치게 한다.
- ⑥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 ⑦ 제3항 및 제4항의 징계처분 시 호봉제의 경우 해당 기간만큼 호봉을 산정하지 않으며 연봉제의 경우 재계약 시 등급을 상향할 수 없다.

제16조(징계절차 및 결과통보) ① 제1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징계 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한 출석통보서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징계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 및 기타보상

제17조(보수) ① 단원의 보수는 기본급·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로 구분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코치를 겸직하는 선수의 기술수당은 지도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절차·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복리후생비와 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 시 지급한다.

제18조(등급책정) ① 단원의 등급책정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② 호봉제의 경우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로 1호봉씩 승급하고, 호봉 합산에 필요한 경력은 동일종목으로 타 실업팀에서 재직한 기간도 포함한다. 단, 적용시점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재직한 경력에 한한다.

③ 연봉제의 경우 매년 연봉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하여 인상하되 인상률은 조정할 수 있으며, 단원의 등급은 1년간의 경기성적을 고려하여 연말에 정한다. 이때, 채용기간 중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의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 직전 하위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 ① 경기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각종 전국규모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개인 및 단체경기 중에서 동일인이 2개 분야에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성적으로 하며, 지도자는 상위 입상선수의 최고성적 1개 분야만 지급한다.

③ 각종 대회 출전 시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전 장려금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퇴직금) ① 단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는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 한다.

③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퇴직금의 청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4장 훈련 및 대회참가

제21조(훈련) ① 지도자는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연간 훈련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월 5일 전까지 월간 훈련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변경)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훈련실시 후 훈련일지와 실탄소모품 수불대장(사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선수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화훈련은 현지적응훈련과 동계·하계훈련으로 구분한다.

1. 현지적응훈련 : 각종 전국규모대회 출전 시 실시

2. 동계·하계훈련 : 매년 1~2월, 7~8월 중 체력보강훈련을 중심으로 실시

④ 각 선수단이 각종 대회와 강화훈련 등에 참가할 때에는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대회참가) ①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대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장경비) ① 운동부가 대회참가 및 훈련을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4조(피복 및 장비 지급) 단원에게 각종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합숙소 설치·운영

제25조(합숙소 운영) ① 원거리 거주 지도자·선수의 편의제공 및 기량향상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합숙소에서 선수단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사(자격증 불필요)를 둘 수 있으며, 조리사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다.

③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구청장이 납부하여야 하며, 소모품 구입 및 그 밖의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운동부의 정서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비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⑤ 입소자의 방배정은 1명 1실 또는 2명 1실 형태 등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

제26조(입소자격) ① 합숙소 입·퇴소는 지도자 및 선수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② 합숙소 입소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선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퇴)소요청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입소자의 의무)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숙소 시설물 및 비품의 훼손 방지
2. 음주, 추태, 소란, 고성방가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3.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금지
4. 합숙소 내 사생활 침해 및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5. 사적 용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제28조(지도자의 의무) 합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토록 하며, 지도자는 훈련시간 이후의 일상생활에서 선수들의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휴식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29조(입소의 제한) 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본인이 퇴소의사를 표시할 때
3. 제2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합숙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장 준용

제30조(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법규를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단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휴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2.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운동부 및 단원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정원(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사 격	장애인수영	비 고
총 계	10명 이내	6명 이내	
지도자 (감독·코치)	2명 이내	1명	※사격부 코치의 경우 선수 중 1명이 겸직 가능
선 수	4~8명 이내	5명 이내	

[별표 2]

자격요건(제5조제3항 관련)

종 목 명	구 분	자격요건(선수의 경우, 요건 1개 이상 충족)
사격 운동경기부	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격종목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종전의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사격 국가대표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3년 이상의 지도 경력에 있는 자
	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 참가한 경력이 있거나 전국규모대회에 참가하여 입상 경력이 있는 자 ○ 전·현직 국가대표로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영종목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종전의 경기지도자)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수영 국가대표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 경력에 있는 자
	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거나 전국 규모대회입상 경력이 있는 자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 체육전문기관 또는 감독이 추천한 자

[별표 3]

징계 양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성실의무 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성희롱	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성매매	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매매	해임			
	성폭력	해임			
	음주운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을 준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청렴의무 위반		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별표 4]

보수지급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사격 운동경기부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기 본 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보수 지급 월의 기준 호봉에 따라 지급	
상 여 금	정근수당	월 기본급의 100%	
수 당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기술수당	200,000원(지도자 : 350,000원)	
복 리 후 생 비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정액급식비	월 300,000원	
	목 욱 비	월 50,000원	
	간 식 비	월 45,000원	

2.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기 본 급		연봉액의 1/12	
상 여 금	정근수당	월 기본급의 100%	
수 당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복 리 후 생 비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정액급식비	월 200,000원	
	간 식 비	월 45,000원	

[별표 5]

등급채정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사격 운동경기부 단원의 등급별 호봉 기준표

구분	초임호봉	채정기준
지도자	일반직 공무원 5급 6호봉	-
특급선수	일반직 공무원 6급 6호봉	임용예정일 기준,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2년 이내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자
A급 선수	일반직 공무원 7급 6호봉	임용예정일 기준, 1년 이내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경력이 있는 자
B급 선수	일반직 공무원 8급 6호봉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거나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자

※ 선수 신규 채용 시 위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며 선수의 등급은 최근 2년 이내의 경기성적·기량·잠재력·사격부에 대한 기여도 등 지도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함.

2.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등급 및 연봉 기준표

구분	등급	연봉(천원)	채정기준(요건 1개 이상 충족)
감독	1등급	35,000~40,000	○ 수영종목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중전의 경기지도자)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수영 국가대표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자
	2등급	30,000~35,000	○ 수영종목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중전의 경기지도자)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수영 국가대표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3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자
코치	1등급	28,000~32,000	○ 수영종목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중전의 경기지도자)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수영 국가대표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2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자
	2등급	24,000~28,000	○ 수영종목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중전의 경기지도자)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수영 국가대표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 경력이 있는 자
선수	1등급	28,000~36,000	○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입상한 자
	2등급	26,000~32,000	○ 아시안게임 입상한 자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3관왕 이상 입상한 자
	3등급	24,200~28,000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자 ○ 전국규모대회에서 3회 이상 우승한 자
	4등급	~25,400	○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자 ○ 경기력 향상을 위해 특별 영입이 필요한 자

※ 선수등급 산정 시 1년 이내 성적에 한하며 다만, 매년 개최되지 않는 대회의 경우 직전 대회 성적으로 함.

[별표 6]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사격 운동경기부

(단위 : 원)

구 분			지 급 금 액			비 고
			우승	준우승	3위	
국 내 대 회	단 체 전	지도자	300,000	200,000	100,000	※ 전국체육대회의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2배를 지급
		선 수 (개인별)	200,000	100,000	70,000	
	개 인 전	지도자	200,000	150,000	100,000	
		선 수	400,000	300,000	200,000	
국 제 대 회	단 체 전	지도자	1,000,000	500,000	300,000	※ 올림픽의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2배를 지급
		선 수 (개인별)	700,000	500,000	300,000	
	개 인 전	지도자	500,000	400,000	300,000	
		선 수	1,500,000	1,000,000	500,000	

2.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단위 : 원)

구 분		지 급 금 액			비 고
		우승	준우승	3위	
국 내 대 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00,000	200,000	150,000	
	기타 전국규모대회	200,000	150,000	100,000	
국 제 대 회	국제대회	500,000	400,000	300,000	※ 패럴림픽의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2배를 지급

[별표 7]

선전 장려금 지급기준(제19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급대상	지급액	비 고
전국규모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팀	500,000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채용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기관] 울산광역시 북구청(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과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 등] _____(이하 “단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¹⁾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이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채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2. “단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도자 혹은 전문선수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채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당사자)

직장운동 경기부	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단원	성명		팀명(종목)	
	주소			
	생년월일		휴대폰	
	직위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쌍방간 재계약에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1)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단원 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 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확인 : 단원 서명)

제5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단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봉 급 : 급 호봉 / 연 봉 : 원
2. 그 밖의 제 수당, 보상금 등은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② 봉급 또는 연봉은 매월 20일에 단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급여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③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단원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담당업무 및 활동범위) ① 단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
2. 단원의 실력배양을 위한 평상 훈련 및 각종 국내·외 전지(강화)훈련 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홍보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협찬, 재능기부 등 부대활동
- ② 활동범위(근무장소)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7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한다.

- ②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 ③ 단원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규정 범위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규정 범위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단원이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확인 : 단원 서명)
- ⑥ 제4항에 따른 단원 동의하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확인 : 단원 서명)

제8조(유급휴일)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본 계약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단원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규정에 따른 입상보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대회 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단원에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단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단원으로부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단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단원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종 위반 행위 등

제10조(단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단원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자신이나 다른 단원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단원은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단원은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원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6조제1항의 단원 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단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단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단원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단원은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단원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⑦ 단원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 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단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12조(영리활동) 단원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3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에서 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단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단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단원이 요구 시에는 금품을 지급 시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단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단원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단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단원의 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단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단원과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단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단원의 명예나 그 밖에 단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및 소집된 때
5. 예산감축 또는 내부방침에 따라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할 때
6.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단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단원이 단원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단원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단원과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채용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상호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서명 또는 인)

(단 원)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입 단 지 원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최종학력	종 목	

경 력

근무기간		직위	근무처	비고
부 터	까 지			
· ·	· ·			
· ·	· ·			
· ·	· ·			

주 요 경 기 실 적

근무기간		직위	경기실적
부 터	까 지		
· ·	· ·		
· ·	· ·		
· ·	· ·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입단취소 등 그 어떤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력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복지카드 사본(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선수에 한함) 1부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경기 실적증명서(선수에 한함) 또는 지도 실적증명서(지도자에 한함) 1부 전 소속팀 이적동의서(이적 시에 한함)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중전의 경기지도자)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지도자에 한함) 1부 반명함 사진(3×4cm) 또는 여권사진(3.5×4.5cm) 2매
------	---

[별지 제3호서식]

퇴 직 금 청 구 서

퇴직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퇴 직 년 월 일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당시 직 명	
본인 외 청구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퇴직자와 의 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 붙임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본인 외 청구자의 경우 퇴직자와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 . .

○ 재직기간

소 속	성 명	근 무 기 간	발 령 청	확 인 (관리담당자)
				(인)

○ 지급액

퇴직 전 월평균 임금	퇴 직 금 액	확 인(관리담당자)
		(인)

거래은행 계좌번호 :

[별지 제4호서식]

선수 합숙소 입(퇴)소 신청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후생복리를 증진하고자 운영하는 합숙소에(서) 아래 일자부로 입소(퇴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퇴)소 희망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현행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장애인수영, 사격)별 각 규정을 폐지하고 통합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징계사항 규정, 표준계약서 사용, 합숙훈련 선택권 보장 등

2. 주요내용

- 목적, 종목 및 명칭, 구성 및 정원, 인권보호 조치(제1조 ~ 제4조)
- 임용 및 자격요건, 구비서류(제5조 ~ 제6조)
-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조 ~ 제9조)
- 복무, 휴가, 겸직금지(제10조 ~ 제12조)
- 계약해지,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절차 및 결과통보(제13조 ~ 제16조)
- 보수 및 기타보상, 훈련 및 대회참가(제17조 ~ 제24조)
- 합숙소 설치 및 운영(제25조 ~ 제29조)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폐지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2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폐지훈령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현행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각 규정을 폐지하고 통합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징계사항 규정, 표준계약서 사용, 합숙훈련 선택권 보장 등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폐지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3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폐지훈령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현행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각 규정을 폐지하고 통합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징계사항 규정, 표준계약서 사용, 합숙훈련 선택권 보장 등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수영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 인권보호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 인권보호 규정
일부개정훈령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 인권보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장”을 “운동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인권침해 예방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를 “인권침해 예방 담당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제5항, 제6항 중 “담당부서장”을 각각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징계기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7조제1항, 제2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의 징계 양정기준을 본 규정의 징계 양정기준으로 준용하여 통일성 있게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계기준 변경(제6조제8항)
 - (당초) 징계기준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53조 및 제54조를 따른다.
 - (변경) 징계기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따른다.
- 용어 일부 정비(제1조, 제2조제4호, 제5조제5항, 제6조제4항~제6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9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12. 15.
2. 점용·사용의 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인공구조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동 892-25번지 외 3필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343.80m²
 - 2) 영구: 19.76m²
 - 나. 기 간
 - 1) 일시: 2022. 12. 16. ~ 2023. 2. 13.
 - 2) 영구: 2023. 2. 14. ~ 2028.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송재호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9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12. 16.
2. 점용·사용의 목적 : 오수관로 매설 및 맨홀 설치(인공구조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동 892-1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8m²
 - 2) 영구: 2m²
 - 나. 기 간
 - 1) 일시: 2023. 1. 1. ~ 2023. 1. 8.
 - 2) 영구: 2023. 1. 9. ~ 2028.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이진욱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22길 25, 110동 108호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30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12. 19.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전력용 콘크리트 전주 2본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 35-1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2.9m²
 - 2) 영구: 0.3m²
 - 나. 기 간
 - 1) 일시: 2022. 12. 20. ~ 2022. 12. 22.
 - 2) 영구: 2022. 12. 23. ~ 2027.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동*산지사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길 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3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73, 소로3-27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319(2021. 12. 3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73, 소로3-275호선)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대안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73호선, 소로3-275호선)사업
 - 나. 명 칭: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2공구)
3. 사업규모

구 분	시설명 (노선명)	규 모(m)		비 고
		폭	길이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2공구)	소로2-649호선	8.0	1,980.0	
	소로3-275호선	6.5	1,447.0	
	소로3-275호선	5.5	519.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당 초: 2018. 6. 1. ~ 2021. 12. 31.

나. 변 경: 2018. 6. 1. ~ 2023.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관계도서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052-241-7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 번	분할지 번	지목	대장면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신명	234-3		천	132	15	울산광역시 북구				
2	신명	282-29		제	2,079	65	국(건설부)				
3	신명	산72-1		임	345	297	울산광역시 북구				
4	신명	282-1		천	62,640	2,108	국(건설부)				
5	신명	산73-1		임	307	240	울산광역시 북구				
6	신명	산75-1		임	351	252	울산광역시 북구				
7	신명	285		천	6,541	1,777	국(건설부)				
8	신명	산84-1		임	256	179	울산광역시 북구				
9	신명	산83-1		임	15	4	울산광역시 북구				
10	신명	284		천	5,269	970	국(건설부)				
11	대안	1036		천	42,734	1,853	국(국토교통부)				
12	대안	20-4		전	19	19	울산광역시 북구				
13	대안	20-5		전	66	66	울산광역시 북구				
14	대안	산25-4		임	17	10	울산광역시 북구				
15	대안	산25-5		임	141	94	울산광역시 북구				
16	대안	산26-6		임	296	141	울산광역시 북구				
17	대안	산26-5		임	395	150	울산광역시 북구				

18	대안	산26-4		임	99	56	울산광역시 복구			
19	대안	1041-40		천	29,630	342	국(국토교통부)			
20	대안	1041-1		천	45,015	4,690	국(국토교통부)			
21	대안	1041-68	1041-102	잡	609	15	국(기획재정부)			
22	대안	1041-98		잡	1	1	국(기획재정부)			
23	대안	1041-84		대	170	170	국(기획재정부)			
24	대안	1041-8	1041-100	대	181	32	국(기획재정부)			
25	대안	1041-72		대	14	7	국(재정경제부)			
26	대안	1041-9	1041-101	임	123	4	국(기획재정부)			
27	대안	1041-85		임	55	55	국(기획재정부)			
28	대안	1041-73		임	47	47	국(재정경제부)			
29	대안	1041-87		임	167	167	국(기획재정부)			
30	대안	1041-76		임	249	228	국(재정경제부)			
31	대안	1041-17		도	179	42	국(국토교통부)			
32	대안	1041-99		임	3	3	국(재정경제부)			
33	대안	1041-86		임	136	123	국(기획재정부)			
34	대안	1041-74		임	1	1	국(재정경제부)			
35	대안	99-60		도	20	2	울산광역시 복구			

36	대안	99-6 3	도	10	4	울산광역시 복구			
37	대안	1041 -23	임	96	6	국(국토교통부)			
38	대안	1041 -26	도	344	14	국(국토교통부)			
39	대안	1041 -70	전	4	4	국(기획재정부)			
40	대안	1041 -82	전	12	12	국(기획재정부)			
41	대안	1041- 78	전	11	11	울산광역시 복구			
42	대안	1041- 89	전	210	186	울산광역시 복구			
43	대안	192- 10	답	33	28	울산광역시 복구			
44	대안	1041 -90	전	133	123	국(기획재정부)			
45	대안	1041 -92	잡	155	72	국(기획재정부)			
46	대안	1041 -79	잡	10	10	국(기획재정부)			
47	대안	194- 12	답	116	75	울산광역시 복구			
48	대안	194- 13	답	119	80	울산광역시 복구			
49	대안	194- 11	답	182	108	울산광역시 복구			
50	대안	194- 8	답	1	1	울산광역시 복구			
51	대안	194-7	답	26	26	울산광역시 복구			
52	대안	194-1 0	답	73	37	울산광역시 복구			
53	대안	1055	도	1,240	14	국(국토교통부)			

54	대안	197-3	답	631	499	울산광역시 복구			
55	대안	197-6	답	139	85	울산광역시 복구			
56	대안	197-7	답	171	60	울산광역시 복구			
57	대안	197-5	답	44	45	울산광역시 복구			
58	대안	1041-34	전	321	267	국(기획재정부)			
59	대안	1041-94	답	251	183	국(기획재정부)			
60	대안	1041-96	답	395	317	울산광역시 복구			
61	대안	1041-81	답	50	30	울산광역시 복구			
62	대안	1041-95	답	225	157	울산광역시 복구			
63	대안	1041-80	답	158	104	울산광역시 복구			
64	대안	184-3	답	23	17	울산광역시 복구			
65	대안	183-3	답	295	197	울산광역시 복구			
66	대안	183-1	답	398	198	울산광역시 복구			
67	대안	182-3	답	161	110	울산광역시 복구			
68	대안	182-1	답	302	229	울산광역시 복구			
69	대안	213-7	답	151	102	국(기획재정부)			
70	대안	213-6	답	302	282	울산광역시 복구			
71	대안	213	천	106	106	울산광역시 복구			
72	대안	213-2	천	185	30	울산광역시 복구			

73	대안	213-4	답	32	27	국(기획재정부)			
74	대안	1053	도	307	23	국(국토교통부)			
75	대안	215-1	천	96	1	울산광역시 복구			
76	대안	213-3	답	10	10	국(기획재정부)			
77	대안	211-4	답	41	41	울산광역시 복구			
78	대안	211-5	답	37	32	울산광역시 복구			
79	대안	1059-1	천	55,679	4,898	국(국토교통부)			
80	대안	217-1	답	206	157	울산광역시 복구			
81	대안	217-3	답	87	38	울산광역시 복구			
82	대안	1058	도	132	33	국(국토교통부)			
83	대안	211-6	답	53	21	울산광역시 복구			
84	대안	218-1	천	145	25	울산광역시 복구			
85	대안	211-3	답	51	43	울산광역시 복구			
86	대안	211-2	임	255	116	울산광역시 복구			
87	대안	산79-2	임	284	92	울산광역시 복구			
88	대안	1061-3	구	35	27	국(농림수산부)			
89	대안	1060	도	63	43	국(국토교통부)			
90	대안	222-1	천	28	12	울산광역시 복구			
91	대안	222-7	답	194	184	울산광역시 복구			

92	대안	220-1	답	88	34	울산광역시 복구			
93	대안	222-5	천	15	2	울산광역시 복구			
94	대안	222-3	답	5	3	울산광역시 복구			
95	대안	222-4	천	263	1	울산광역시 복구			
96	대안	221-3	천	232	232	울산광역시 복구			
97	대안	221-1	천	462	229	울산광역시 복구			
98	대안	375-1	답	23	2	울산광역시 복구			
99	대안	1069	도	66	7	국(국토교통부)			
100	대안	375-2	답	162	147	울산광역시 복구			
101	대안	1070	도	162	51	국(국토교통부)			
102	대안	산69-3	임	138	138	울산광역시 복구			
103	대안	378-7	임	269	183	울산광역시 복구			
104	대안	378-8	답	384	189	울산광역시 복구			
105	대안	378-4	천	366	211	울산광역시 복구			
106	대안	378-2	천	92	22	울산광역시 복구			
107	대안	378-6	천	46	1	울산광역시 복구			
108	대안	1059-5	천	83	74	국(국토교통부)			
109	대안	1071-7	답	97	85	국(기획재정부)			
110	대안	374-1	답	1	1	울산광역시 복구			

129	대안	455-5		답	120	105	울산광역시 복구			
130	대안	1092		도	952	10	국(국토교통부)			
131	대안	481-14		천	570	517	울산광역시 복구			
132	대안	481-21		천	130	130	울산광역시 복구			
133	대안	481-19		천	62	62	울산광역시 복구			
134	대안	481-13		천	151	141	울산광역시 복구			
135	대안	481-11		천	78	78	울산광역시 복구			
136	대안	481-16		답	10	10	울산광역시 복구			
137	대안	481-18		답	27	27	울산광역시 복구			
138	대안	481-17		천	11	11	울산광역시 복구			
139	대안	1087		도	255	99	국(국토교통부)			
140	대안	489-7		천	65	65	울산광역시 복구			
141	대안	489-5		천	290	246	울산광역시 복구			
142	대안	489-3		천	32	29	울산광역시 복구			
143	대안	489-4		천	2	2	울산광역시 복구			
144	대안	1086		도	33	2	국(국토교통부)			
145	대안	1085		도	813	117	국(국토교통부)			
146	대안	1112		도	73	52	국(국토교통부)			
147	대안	834-		임			울산광역시 복구			

		14			46	37				
148	대안	495	495-3	천	205	13	울산광역시 복구			
149	대안	495-1	495-4	천	149	118	울산광역시 복구			
150	대안	497-1	497-3	천	130	74	울산광역시 복구			
151	대안	498-1	498-3	천	56	40	울산광역시 복구			
152	대안	847-1	847-4	천	400	319	울산광역시 복구 외 1인			
153	대안	847-3	847-6	천	446	32	울산광역시 복구			
154	대안	845-4	845-9	답	190	145	울산광역시 복구			
155	대안	845-1		임	66	65	울산광역시 복구			
156	대안	산252	산252-2	임	41,883	29	울산광역시 복구			
합 계					317,590	29,573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3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8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117(2020. 6. 2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84호선)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84호선)사업
 - 나. 명 칭 : 신천동 수성천 일원(중로3-84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L=313.4m, B=6.0~12.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당 초 : 2020. 6. 25. ~ 2022. 12. 31.
 - 나. 변 경 : 2020. 6. 25. ~ 2024.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설과(☎ 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복구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신천동	335-24	답	149.0	149.0	우건	울산 북구 신명동 151-13 서강프라자 000호				
2	"	335-23	답	149.0	149.0	윤갑길 전화	울산 동구 주전동 000 울산 중구 약사동 707 래미안2차 00동 00호				
3	"	335-28	답	1.0	1.0	호계매곡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5(호계동)				
4	"	334-28	도	29.0	29.0	울산광역시 시 북구					
5	"	335-25	답	113.0	113.0	서영수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00(화봉동)				
6	"	335-26	답	137.0	137.0	김한수	울산시 남구 신정동 0000	김선수	울산 남구 달동 1352-5 현대아파트000동 000호	소유권이전청구	

										권 가 등 기
7	"	334-26	답	316. 0	316.0	김 문 수	북구 호계로 000 (신천동)			
8	"	293	답	48.0	48.0	임 옥 자	울산 중구 구르미9길 00(다운동)			
9	"	294-32	답	99.0	99.0	김 제 용 박 순 자 박 옥 수 윤 진 울 정 시 대 정 용 수 최 병 형 황 용 운	울산 북구 제내1길 00 (신천동) 울산 북구 제내4길 00(신천동) 울산 북구 신천동 358-9 협성노블리스 000동 000호 울산 북구 제내1길 00(신천동) 울산 북구 찬샘2길 16-6 (신천동) 울산 북구 염포동 326 염포성원상떼빌 000동 000호 울산 북구 제내1길 00(신천동) 울산 북구 제내1길 00(신천동)			
10	"	294-36	도	3.0	3.0	호계매곡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5(호계동)			
11	"	294-30	대	71.0	71.0	울산광역시 시 북구				

12	"	294-35	대	66.0	66.0	류 은 순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31-1,에이동 000호(학성동,학성연립)				
13	"	294-28	대	1.0	1.0	호계매곡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0(호계동)				
14	"	292-7	답	1,63 4.0	448.0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15	"	292-8	도	217. 0	217.0	울산광역시 시 북구					
16	"	292-9	답	56.0	56.0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17	"	749	도	3,85 7.0	45.0	국토교통 부					
18	"	1	답	1.0	1.0	양 태 진 윤 성 길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로 00 울산시 중구 서원2길 00 (반구동)				
19	"	4-1	답	109. 0	109.0	김 남 규	울산 남구 꽃대나리로46번길 7, 000동0000호(야음동,한라하이타운아파트)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11-6		
20	"	4	답	156. 0	24.0	강 연 화 김 찬 오	울산시 북구 제내3길 00(신천동) 울산시 남구 거마로 17번길 00(옥동)				
21	"	4-2	답	946. 0	649.0	강 연 화 김 찬 오	울산시 북구 제내3길 00(신천동) 울산시 남구 거마로 17번길 00(옥동)				

22	"	5-4	전	509. 0	58.0	강 연 화	울산시 북구 제내3길 00(신천동)				
합 계				8,667	2,78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303호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276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77-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276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7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276호)사업
 - 나. 명 칭: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가. 당초 : 주차장 조성 260면 (8,848㎡)
 - 나. 변경 : 주차장 조성 256면 (8,645㎡)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2018. 10. 18. ~ 2022. 12. 31.(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불입(변경)
7.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조서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76	주차장	주차장	창평동 59-2번지 일원	8,850	감) 205	8,645	'16.3.3 울(북)고 33호	면적 감소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76	주차장	· 면적감소 : 감 205m ² - 8,850m ² → 8,645m ²	· 오토벨리로 도로용지 편입구간 제척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나. 원지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4	원지3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17번지 일원	19,537	-	19,537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537	-	19,537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390	-	17,390	89.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147	-	2,147	11.0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1	30~50	주간선 도로	13,352 (72)	대2-1	북구 중산동 시계	일반 도로	효문공단	'00.3.4 울고33호	
기정	소로	3	272	4~7	국지 도로	1,441 (5)	소로 1-138	대 2-21	일반 도로		'16.3.3 울(북)고 33호	

주) ()는 구역내 편입연장임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76	주차장	주차장	창평동 59-2번지 일원	8,850 (621)	감) 205	8,645 (621)	'16.3.3 울(북)고 33호	구역내 변경없음

주) ()는 구역내 편입면적임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76	주차장	· 면적감소 : 감 205m ² - 8,850m ² → 8,645m ² (621m ²) (621m ²)	· 오토밸리로 도로용지 편입구간 제척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구역내 변경없음)

4)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해당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폐율	관련법·조례에 따름
		용적률	관련법·조례에 따름
		높이	관련법·조례에 따름
		배치	-
		형태	-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8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조서와지번및지목과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변경)

□ 주 소 : 북구 창평동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 용	
1	창평동	40-3	전	53	53	53		울산광역시 북구					
2	창평동	56	답	1,536	1,536	1,536		울산광역시 북구					
3	창평동	56-1	답	769	769	769		울산광역시 북구					
4	창평동	58-1	답	572	572	572		울산광역시 북구					
5	창평동	58-2	답	158	158	158		울산광역시 북구					
6	창평동	58-5	답	108	108	108		울산광역시 북구					
7	창평동	59-2	답	1,021	1,021	1,021		울산광역시 북구					
8	창평동	71-2	답	476	476	476		울산광역시 북구					
9	창평동	71-4	유	158	158	158		울산광역시 북구					
10	창평동	72-3	답		496	496		울산광역시 북구					

				496									
11	창평동	72-8	유	347	347	347		울산광역시 북구					
12	창평동	77-8	전	239	239	239		울산광역시 북구					
13	창평동	1228-3	도	124	124	124		울산광역시 북구					
14	창평동	1229-5	구	169	169	169		국(농림축산식품부)					
15	창평동	1229-2	구	109	109	109		국(농림축산식품부)					
16	창평동	1230-5	도	62	62	62		울산광역시 북구					
17	창평동	1231-4	구	100	100	100		국(농림축산식품부)					
18	창평동	1292-50	대	253	253	253		울산광역시 북구					
19	창평동	1292-8	대	236	236	236		울산광역시 북구					
20	창평동	1292-10	잡	40	40	40		울산광역시 북구					
21	창평동	1292-17	잡	1	1	1		울산광역시 북구					
22	창평동	1292-20	대		24	24		울산광역시 북구					

				24									
23	창평동	산67-3	임	1,424	1,424	1,424		울산광역시 북구					
24	창평동	산69-3	임	170	170	170		울산광역시 북구					
25	창평동	1300	도	76,325	203	-	-	울산광역시					제척
계				84,970	8,848	8,64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304호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염포동 20-1번지 일원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84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염포동 20-1번지 일원	42,953.5	증 2,452.5	45,406.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4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A=증 2,452.5㎡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편입에 따른 면적 증가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42,953.5	증 2,452.5	45,406.0	100.0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2,953.5	-	42,953.5	94.6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452.5	2,452.5	5.4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6	714	6,078.3	2	473	4,865.8	-	-	-	4	241	1,212.5
변경		6	940	7,418.3	2	473	4,865.8	-	-	-	4	467	2,552.5
기정	중로	1	-	77.0	-	-	-	-	-	-	1	-	77.0
기정	소로	5	714	6,001.3	2	473	4,865.8	-	-	-	3	241	1,135.5
변경		5	940	7,341.3	2	473	4,865.8	-	-	-	3	467	2,475.5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81	12	국지 도로	342	중2-40	소3-220	일반 도로	양정 일원	'22. 9. 1. 울고188호	양정1지구: 소로1-98호선 → 중로3-481호선 (금회 구역 내 가각편입)
기정	소로	1	102	10	국지 도로	420 (420)	중로3-481	염포동 961-29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1. 3. 3. 울(북)고19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1	103	10	국지 도로	87 (53)	중로3-481	소로3-273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1. 3. 3. 울(북)고19호	(): 구역 내 폭원 6m편입
기정	소로	3	273	6	국지 도로	87 (87)	소로1-103	염포동 961-18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7. 8. 24. 울(북)고154호	(): 구역 내 폭원 2m편입
기정	소로	3	220	6	국지 도로	154 (154)	중로3-481	소3-221	일반 도로	심천 지구	'76. 4. 9. 경고62호	'12. 2. 16. 울고24호 (금회 구역 내 편입)
기정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80	소1-99	소1-101	일반 도로	양정 일원	'76. 4. 9. 경고62호	'20. 7. 1. 울(북)고122호
변경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306 (226)	소3-220	소1-101	일반 도로	양정 일원	'76. 4. 9. 경고62호	노선연장 (금회 구역내 일부구간 편입)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3-221	소로3-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B=6m, L=80→30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조건사항에 따라 구역 외 도로의 개설을 위해 기 실효된 소로3-221호선 일부구간을 실효 전으로 환원하고자 함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공공지

(가)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0	공공공지	북구 염포동 961-33일대	2,456.6	-	2,456.6	'06. 4. 13. 울고 91호	'19. 2. 14. 울(북)고 27호

(2) 공원

(가) 소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08	-	소공원	북구 염포동 691-55일대	2,292.5	-	2,292.5	'17. 8. 24. 울(북)고154호	'19. 2. 14. 울(북)고 27호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7	사회복지 시설	북구 염포동 48-6일대	975.6	-	975.6	'11. 3. 3. 울(북)고 19호	'19. 2. 14. 울(북)고 27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37,987.7	-	37,987.7	-	-	-	-
기정	-	1B	1,303.0	-	1,303.0	1	1B-1	936.0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건축물
기정						2	1B-2	367.0	하천구역
기정		2B	32,482.3	-	32,482.3	1	2B-1	29,343.2	공동주택 (공개공지 559㎡포함)
기정						2	2B-2	975.6	기반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
기정						3	2B-3	44.2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4	2B-4	1,308.7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5	2B-5	535.4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6	2B-6	275.2	하천구역
기정		3B	4,202.4	-	4,202.4	1	3B-1	539.4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2	3B-2	106.8	하천구역
기정						3	3B-3	31.2	하천구역
기정						4	3B-4	216.9	하천구역
기정						5	3B-5	986.7	하천구역
기정						6	3B-6	28.9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7	3B-7	2,292.5	소공원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1B-1	허용용도	A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20m(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	2B-1	허용용도	B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20m(-) 이하	층수는 관련법령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	2B-2	허용용도	C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20m(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건축물의 용도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주거용지(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주택용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사회복지시설(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공개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면적(㎡)	비고
기정	-	2B-1	공개공지	302	• 오픈스페이스 및 주민들의 편의공간 등을 위한 공개공지
기정	-	2B-1	공개공지	257	

나. 기타 조건사항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1	심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외 도로 등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도로, 소공원, 공공공지, 하천)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시공 및 기부채납 할 것 	'17. 8. 24. 울(북)고154호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2. 용도지역·지구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4. 지구단위계획 총괄도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6.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7.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게재생략

V.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도: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305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소로2-88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신천동 46-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소로2-8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8	8	국지도 로	48	대로 3-40	소로 2-76	일반 도로		'90. 12. 6. 경고408호
변경	소로	2	88	8	국지도 로	60	중로 3-442	소로 2-90	일반 도로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88	소로2-88	• 노선 기점 변경 및 연장 (L=48m→60m, 증 12m)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20-196호)에 따라 기점노선 폭원 축소로 인해 소로2-88호선과 단절되어 노선 정비(연장)를 통해 기점부 도로(중로3-442호선)와 연결

2. 관계도면: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306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의회 의결일자 : 2022. 12. 2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545,525,498	100.00%	538,230,967	100.00%	7,294,531	1.36%
일반회계	543,095,102	99.55%	535,794,099	99.55%	7,301,003	1.36%
특별회계	2,430,396	0.45%	2,436,868	0.45%	△6,472	△0.27%
기타특별회계	2,430,396	0.45%	2,436,868	0.45%	△6,472	△0.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4,724	0.01%	64,724	0.01%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1,543	0.06%	322,115	0.06%	△572	△0.18%
주차장특별회계	2,044,129	0.37%	2,050,029	0.38%	△5,900	△0.29%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비교증감	
				기정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543,095,102	100.00%	535,794,099	100.00%	7,301,003	1.36%
100	지방세수입	89,045,984	16.40%	87,525,984	16.34%	1,520,000	1.74%
110	지방세	89,045,984	16.40%	87,525,984	16.34%	1,520,000	1.74%
200	세외수입	26,325,701	4.85%	25,102,973	4.69%	1,222,728	4.87%
210	경상적세외수입	20,344,035	3.75%	18,881,145	3.52%	1,462,890	7.75%
220	임시적세외수입	4,770,626	0.88%	5,345,728	1.00%	△575,102	△10.76%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11,040	0.22%	876,100	0.16%	334,940	38.23%
300	지방교부세	34,255,200	6.31%	32,343,000	6.04%	1,912,200	5.91%
310	지방교부세	34,255,200	6.31%	32,343,000	6.04%	1,912,200	5.91%
400	조정교부금등	60,202,880	11.09%	58,442,880	10.91%	1,760,000	3.01%
410	자치구조조정교부금등	60,202,880	11.09%	58,442,880	10.91%	1,760,000	3.01%
500	보조금	306,673,571	56.47%	306,000,189	57.11%	673,382	0.22%
510	국고보조금등	183,970,890	33.87%	183,145,354	34.18%	825,536	0.45%
520	시·도비보조금등	122,702,681	22.59%	122,854,835	22.93%	△152,154	△0.12%
600	지방채	1,150,000	0.21%	1,150,000	0.21%	0	0.00%
610	국내차입금	1,150,000	0.21%	1,150,000	0.21%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441,766	4.68%	25,229,073	4.71%	212,693	0.84%
710	보전수입등	24,137,272	4.44%	23,882,684	4.46%	254,588	1.07%
720	내부거래	1,304,494	0.24%	1,346,389	0.25%	△41,895	△3.11%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비교증감	
				기정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543,095,102	100.00%	535,794,099	100.00%	7,301,003	1.36%
010	일반공공행정	22,483,417	4.14%	23,880,399	4.46%	△1,396,982	△5.85%
020	공공질서및안전	2,846,515	0.52%	2,870,819	0.54%	△24,304	△0.85%
050	교육	1,836,866	0.34%	1,915,566	0.36%	△78,700	△4.11%
060	문화및관광	29,771,971	5.48%	31,609,034	5.90%	△1,837,063	△5.81%
070	환경	14,631,845	2.69%	15,024,285	2.80%	△392,440	△2.61%
080	사회복지	290,787,586	53.54%	290,622,668	54.24%	164,918	0.06%
090	보건	19,273,329	3.55%	22,272,277	4.16%	△2,998,948	△13.46%
100	농림해양수산	32,762,261	6.03%	31,487,474	5.88%	1,274,787	4.05%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270,362	0.60%	3,644,873	0.68%	△374,511	△10.28%
120	교통및물류	15,490,646	2.85%	12,592,776	2.35%	2,897,870	23.01%
140	국토및지역개발	31,937,843	5.88%	31,609,611	5.90%	328,232	1.04%
160	예비비	16,044,492	2.95%	3,670,512	0.69%	12,373,980	337.12%
900	기타	61,957,969	11.41%	64,593,805	12.06%	△2,635,836	△4.0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7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 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 도로 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 도로 개설)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3-3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등 급				연 장(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2	577	15~20	260	
중로	3	474	11	76	
소로	2	669	8	4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무궁화신탕 대표이사 권준명

-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P&S타워)
5. 사업기간: 인가일 ~ 2025. 06. 30.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8. 열람기간: 공보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9.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신천동	203-3	전	1302.0	130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2	신천동	203-40	창	255.3	255.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	신천동	203-8	도	99.0	61.0	울산광역시 북구					
4	신천동	203-9	도	37.3	37.3	울산광역시 북구					
5	신천동	203-10	도	54.0	54.0	울산광역시 북구					
6	신천동	203-11	도	30.1	30.1	울산광역시 북구					
7	신천동	203-12	도	23.3	23.3	울산광역시 북구					
8	신천동	203-13	도	17.3	17.3	울산광역시 북구					
9	신천동	203-14	도	86.3	86.3	울산광역시 북구					
10	신천동	203-41	대	132.7	132.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1	신천동	203-30	대	261.9	261.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2	신천동	203-31	전	31.2	31.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3	신천동	203-32	전	54.0	54.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4	신천동	203-33	대	49.4	49.4	울산광역시 북구					
15	신천동	203-42	전	180.0	18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6	신천동	203-35	도	39.0	39.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7	신천동	203-36	전	4.7	4.7	울산광역시 북구					
18	신천동	203-37	전	31.3	31.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9	신천동	227	전	1906.5	33.0	김호권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6-3 새운파래스타운 3동 503호	이○호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6-3 새운파래스타운 ○동 ○○○호		
20	신천동	229-2	전	691.0	4.0	고춘림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45, 유곡동 에일린의 풀 3차 302동 1502호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1	신천동	229-3	전	826.9	212.0	고태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양남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중앙길 39-2	근저당권	
22	신천동	229-7	전	245.2	24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23	신천동	229-8	전	194.0	181.0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드림인시티에일린 의플 2차 204동 1203호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7	근저당권	
24	신천동	477-18	대	109.9	109.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25	신천동	477-19	전	5.1	5.1	국 (기획재정부)					
26	신천동	477-20	전	206.2	206.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27	신천동	477-5	전	219.5	50.0	권능자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77-5				
28	신천동	477-6	도	39.8	39.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29	신천동	477-7	도	114.1	114.1	울산광역시 북구					
30	신천동	477-9	전	280.7	188.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1	신천동	477-10	대	307.2	24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2	신천동	477-11	대	557.0	37.0	관선존양계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35-10	이창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도곡동 타월팰리스아파트 비동 5903호	대표자 변경	
33	신천동	477-21	대	41.7	41.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4	신천동	477-14	도	100.7	100.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5	신천동	478-1	전	60.0	6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6	신천동	478-5	대	231.0	231.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7	신천동	478-16	도	59.0	59.0	울산광역시 북구					
38	신천동	478-17	전	2.0	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9	신천동	478-18	도	10.0	10.0	울산광역시 북구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3)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0	신천동	478-19	대	35.0	20.0	울산광역시					
41	신천동	478-20	대	43.0	43.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2	신천동	478-11	대	1.0	1.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3	신천동	478-21	도	146.0	69.0	울산광역시					
44	신천동	481-5	도	201.0	163.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5	신천동	481-17	도	103.0	11.0	울산광역시 북구					
46	신천동	759-32	도	1,760.9	607.5	국 (국토교통부)					
47	신천동	759-33	도	122.9	16.5	국 (국토교통부)					
48	신천동	759-26	도	63.0	63.0	국 (국토교통부)					
49	신천동	759-27	도	230.0	3.0	국 (국토교통부)					
합 계				11,602.1	5,812.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774호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울동 공공주택지구 (효문동 105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 사업

나. 명 칭: 울산광역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열공급설비)

2. 위 치: 효문동 1055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당초) 열공급설비 908m²
(변경) 열공급설비 908m², 보행자우선도로 355m²

가. 열공급설비 (변경없음)

시설	면적(m ²)	규모	비 고
열공급설비	9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수보일러: 0.8 Gcal/hr × 1대 - 온수저장탱크: 40m³ × 1대 (STS 재질) - 판형열교환기: 440 Mcal/hr × 2대 (STS 재질) - 온수공급펌프: 입형인라인 펌프 × 7(3)대 (임펠러 SSC13. 축 STS 재질) - 수소연료전지: 440kW×3대 (두산퓨얼셀_PAFC Type) 	변경없음

나. 보행자우선도로 (변경)

등 급				면적(m ²)	연 장(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3	보81	6	355	58.9	변경(추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대표 한삼건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5.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 2023. 7. 25.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8. 열람기간: 공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 간

9.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및 토지세목조서 현황

(단위 : m²)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비 고
						성 명	주 소	
울동공공 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효문동 1055번지 (열공급설비)	잡	908	908	908	울산 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광역시 남구 두왕로 (신정동) 318	변경 없음
울동공공 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효문동 1056번지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355	355	355	울산 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광역시 남구 두왕로 (신정동) 318	변경 (추가)
합계 (당초)			908	908	908			
합계 (변경)			1,263	1,263	1,26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784호

학교시설사업(약수초등학교) 시행계획 의견청취 열람공고

약수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일반인, 토지 소유자,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니, 토지소유자 등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 및 시행면적

- 사업시행지: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312-3번지 일원
- 사업면적: 13,280.7m²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별지 참고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 성 명: 울산광역시교육감

라.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초등학교
- 명 칭: 약수초등학교

마. 사업시행(예정)기간: 학교시설사업승인일로부터 2025. 2. 29.까지

2. 열람(공고)기간: 2022. 12. 22. ~ 2023. 1. 5.(공고일로부터 15일 간)

3. 열람장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2-210-5934),

교육여건개선과(☎052-210-5962)

4. 의견서 제출: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과(☎052-241-7993)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052-210-5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소재지: 북구 중산동)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1330-1	도	5.6	울산광역시 북구						
2	1331-2	도	444.6	울산광역시 북구						
3	1332-1	도	679.6	울산광역시 북구						
4	1332-2	도	8.0	울산광역시 북구						
5	1335-1	도	7.2	울산광역시 북구						
6	1336-1	도	805.2	울산광역시 북구						
7	1311-1 6	대	208.5	울산광역시 교육감						
8	1311-4	대	285.6	울산광역시 교육감						
9	1311-5	대	451.1	울산광역시 교육감						
10	1311-6	대	403.2	울산광역시 교육감						
11	1311-7	대	333.7	울산광역시 교육감						
12	1311-1 7	대	207.6	울산광역시 교육감						
13	1312-3	공	486.6	울산광역시 북구						
14	1312-2	대	3,420.6	울산광역시 교육감						
15	1313-1	대	278.5	울산광역시						

연 번	지 번	지 목	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교육감						
16	1313-2	대	368.2	울산광역시 교육감						
17	1313-3	대	522.5	울산광역시 교육감						
18	1313-4	대	294.1	울산광역시 교육감						
19	1313-5	대	282.1	울산광역시 교육감						
20	1313-6	대	627.7	울산광역시 교육감						
21	1313-7	대	521.0	울산광역시 교육감						
22	1313-8	대	362.0	울산광역시 교육감						
23	1313-9	대	383.4	울산광역시 교육감						
24	1313-1 0	도	72.6	울산광역시 북구						
25	1313-1 1	대	531.5	울산광역시 교육감						
26	1313-1 2	대	382.7	울산광역시 교육감						
27	1313-1 3	대	248.0	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40길 *** (황금동)					
28	1314-1	대	306.9	울산광역시 교육감						
29	1314-2	대	352.4	울산광역시 교육감						
합 계 (29필지)			13,280.7							